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 주도의 평생학습에서 민간 주도의 평생 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평생교육법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도모함(안 제1조)
- 나.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안 제4조)
- 다.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11조의3)
- 라.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4조)
- 마. 평생교육법 및 국가평생학습 추진 정책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에 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추진근거의 정당성을 도모함(안 제17조)

바. 민간주도의 평생학습 정책 추진과 경상북도 도책사업의 연계 및 체계성을 명확히 하고자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활동사항에 대해 신설하여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안 제18조 ~ 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침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2.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구미시의회의원
3.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4. 구미시평생교육원장
5.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시민 등 평생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제1항 중 “사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 제목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을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를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을 “시장은 시민”으로,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를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으로 한다.

제13조 중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를 “구미시평생교육원 및”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능)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연구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관련 종사자의 관리 및 연수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 · 유치 및 지원

8.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중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시장은 구미시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① 시장은 읍 · 면 · 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 · 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마을)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공동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앞에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삽입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시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임무)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마을단위 평생 학습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2.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3.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마을평생학습 강좌 관리 및 감독
5. 그 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3.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행사 참가, 선진지 연수·견학
 4.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 설>	제4조(평생교육진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

제4조(경비보조)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
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5조(지도 및 지원) 시장은 평생

교육단체·평생교육시설 설치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
체·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
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
장의 자문에 응한다.

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
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① 시장-----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위하여 -----

<삭 제>

제7조(기능) ----- 각

호-----
-----.

1. ~ 3. (생략)

4. 기타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미시 교육담당국장,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구미교육청 교육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장

2.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교육장

3.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

4. 구미시의회 의원

5.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6.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7.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2.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구미시의회의원

3.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4. 구미시평생교육원장

5.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시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협회의 원할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
- 업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 한다. <후단 삭제>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신 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협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생략)

<신 설>

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
----- 1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신 설>

제3장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제12조(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
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 ①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
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
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위치)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은 구
미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
여 의견 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
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수당 등의 지급) 협의
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
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제12조(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평생
학습관 등 설치) ① 시장은 시
민-----

-----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치)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
-----.

제14조(기능)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2. 시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4.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4조(기능)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연구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관련 종사자의 관리 및 연수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
8.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생교육사 등) 시장은 구

미시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

제16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는
장은 -----

-.

제1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마을)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

<신 설>

제4장 보칙

제17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
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

공동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시장
은 평생교육에 대한 소정의 기
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을
평생교육지도자로 임명할 수 있
다.

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임무)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마을단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2.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3.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마을평생학습 강좌 관리 및 감독
5. 그 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u>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u> <u>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u> <u>다.</u> <u>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u> <u>정 운영</u> <u>2.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u> <u>사 등 개최</u> <u>3.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u> <u>국내외 각종 교육 및 행사 참</u> <u>가, 선진지 연수·견학</u> <u>4.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u> <u>등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u> <u>한 사업</u> <u>5. 그 밖에 마을평생학습 활성</u> <u>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u> <u>사업</u> <u>제2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u> <u>에</u> ----- -----.
--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구성에 따른 정책·사업의 시행과, 주민주도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평생교육 진흥 및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에 따라 지원금을 줄 수 있으나 기존에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있더라도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에 해당이 안됨(안 제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4. 작성자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김재현 (480-4333)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 안 자	과 장	이 동 상
	담 당	강 호 근
	담 당 자	김 재 현 (480-4333)